

[붙임]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

1.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5조(부총장) 중 제3항을 삭제한다.
 - 제8조(부속기관) 제1항 중 제6호, 제8호, 제9호를 삭제한다.
 - 제9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제1항 중 “교수학습지원센터, NCS인증센터, 학사학위센터”를 “학사학위센터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학생복지처”를 “학생성공지원처”로 하며, 같은조 제3항 중 “한국어학당, 원어민사업단”을 “한국어학당, 원어민사업단, 글로벌교육센터, 해외출장소, 세종학당(후략)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조 제5항 중 “대외협력처”를 “입학홍보처”로 하고, 같은조 제6항 중 “귀금속보석연구센터, 창업보육센터, 산단캠퍼스지원단,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, 보건과학연구소, 간호과학연구소, 문화관광연구소, 학교기업사업단, 현장실습지원센터, 기업신속대응센터, 창의융합센터를 둔다.”를 “귀금속보석연구센터, 산단캠퍼스지원단,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, 보건과학연구소, 간호과학연구소, 문화관광연구소, 학교기업사업단, 현장실습지원센터, 기업신속대응센터, 창의융합교육센터를 둔다.”로 하며, 같은조 제7항 을 삭제한다.
 - 제10조(각 부서의 장) 제3항 중 “평가관리실장”을 “대외협력실장”으로 하고, “각 부서의”를 “대외협력실에는 명예대외협력실장을 둘 수 있으며, 각 부서의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4항 중 “입학관리처장, 학생복지처장, 대외협력처장, 국제교류처장, 취창업지원처장”을 “입학홍보처장, 학생성공지원처장, 국제교류처장”으로 한다.
 - 제12조(직할부서) 제2항 중 “② 평가관리실에는 평가관리팀”을 “② 대외협력실에는 대외협력팀 (후략)”으로 한다.
 - 제13조(행정부서) 제1항 중 “기획조정팀”을 “기획조정팀과 평가관리팀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3항 중 “입학관리처”를 “입학홍보처”로 “입학관리팀”을 “입학관리팀과 홍보전략팀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4항 중 “학생복지처”를 “학생성공지원처”로 “학생복지팀”을 “학생복지팀과 진로취업팀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5항을 삭제한다.
 - 제22조(NCS교육단)을 조삭제한다.
 - 제23조(창업교육단)을 조삭제한다.
 - 제30조(임명) 제1항 중 “입학관리처장, 학생복지처장, 대외협력처장, 국제교류처장, 취창업지원처장”을 “입학홍보처장, 학생성공지원처장, 국제교류처장”으로 “평가관리실장”을 “대외협력실장”으로 한다.
 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5조(부총장) ①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, 교원으로 보한다. ② 부총장의 직무는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명예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대학 발전을 위한 현저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임명한다.	제5조(부총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삭 제>
제8조(부속기관) ① 우리대학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. 1. 도서관 2. 신문·방송사 3. 평생교육원 4. 정보전산원 5. 학생생활관 6. 원격평생교육원 7. 원광문화연구원 8. 국제개발원 9. 글로벌다문화교육원 10. 혁신교육원	제8조(부속기관) ① 우리대학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6. <삭 제> 7. (현행과 같음) 8. <삭 제> 9. <삭 제> 10. 현행과 동일
제9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우리대학에 다음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. ① 교무처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, NCS인증센터, 학사학위센터를 둔다. ② 학생복지처에는 학생상담센터, 성상담센터, 장애학생지원센터, 학생이력관리센터, 사회봉사단을 둔다. ③ 국제교류처에는 한국어학당, 원어민사업단을 둔다. ④ 국제개발원에는 글로벌교육센터, 해외출장소, 한국어학당, 원어민사업단, 세종학당을 둔다. ⑤ 대외협력처에는 서울홍보관을 둔다. ⑥ 산학협력단에는 귀금속보석연구센터, 창업보육센터, 산단캠퍼스지원단,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, 보건과학연구소, 간호과학연구소, 문화관광연구소, 학교기업사업단, 현장실습지원센터, 기업신속대응센터, 창의융합센터를 둔다. ⑦ 취창업지원처에는 창업교육센터를 둔다.	제9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우리대학에 다음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. ① ----- 학사학위센터 ----. ② 학생성공지원처 ----- -----. ③ ----- 한국어학당, 원어민사업단, 글로벌교육센터, 해외출장소, 세종학당 ----. ④ <항삭제> ⑤ 입학홍보처-----. ⑥ ----- 귀금속보석연구센터, 산단캠퍼스지원단,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, 보건과학연구소, 간호과학연구소, 문화관광연구소, 학교기업사업단, 현장실습지원센터, 기업신속대응센터, 창의융합교육센터를 둔다. ⑦ <항삭제>
제10조(각 부서의 장) ① 대학교당, 대학본부, 학부·학과, 부속기관,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및 총장직속기구의 각 부서에 장을 두어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. 대학본부 각부서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 부서장을 둘 수 있다. ② 대학교당 교무는 교무자격을 가진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.	제10조(각 부서의 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
③ 기획조정처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의 직원으로, 산학협력단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, 비서실장 및 평가관리실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의 직원을 보한다. 각 부서의 부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. ④ 교무처장, 입학관리처장, 학생복지처장, 대외협력처장, 국제교류처장, 취창업지원처장은 교원으로 보한다. 각 부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고, 부속기관은 교원으로 보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대외협력실장</u> ----- -----, <u>대외협력실에는 명예대외협력실장을 둘 수 있으며, 각 부서의</u> -----. ④ ----, <u>입학홍보처장, 학생성공지원처장, 국제교류처장</u>은 -----.
제12조(직할부서) ① 비서실에는 의전팀을 둔다. ② 평가관리실에는 평가관리팀을 둔다. ③ 제5절의 특별사업기구는 자체 규정을 운영한다. ④ 각 팀의 팀장은 직원으로 보하며, 팀장은 소속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	제12조(직할부서) ① 현행과 동일 ② <u>대외협력실에는 대외협력팀</u> 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행정부서) ① 기획조정처에는 <u>기획조정팀</u>을 둔다. ② 교무처에는 교무팀을 둔다. ③ 입학관리처에는 입학관리팀을 둔다. ④ 학생복지처에는 학생복지팀을 둔다. ⑤ 대외협력처에는 홍보전략팀을 둔다. ⑥ 총무처에는 총무팀, 관리팀을 둔다. ⑦ 국제교류처에는 국제협력팀을 둔다. ⑧ 취창업지원처에는 취창업지원팀을 둔다. ⑨ 각팀의 팀장은 직원으로 임명하며, 팀장은 소속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	제13조(행정부서) ① ---- <u>기획조정팀과 평가관리팀</u> 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입학홍보처</u> — <u>입학관리팀과 홍보전략팀</u> ----. ④ <u>학생성공지원처</u> -- <u>학생복지팀과 진로취업팀</u> ----. ⑤ <항삭제> ⑦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 ⑧ <항삭제> ⑨ (현행과 같음)
제22조(NCS교육단) ① NCS교육단에 단장을 두고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② NCS교육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	제22조(NCS교육단) <삭제> ① <삭 제> ② <삭 제>
제23조(창업교육단) ① 창업교육단에 단장을 두고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② 창업교육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	제23조(창업교육단) <삭제> ① <삭 제> ② <삭 제>
제30조(임명) ① 부총장,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, 입학관리처장, 학생복지처장, 대외협력처장, 국제교류처장, 취창업지원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비서실장, 평가관리실장 및 부속기관장의 보직과 팀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 이외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하고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	제30조(임명) ① ----- <u>입학홍보처장, 학생성공지원처장, 국제교류처장,</u> ----- -----, <u>대외협력실장</u> ----- ----- -----.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교원 연구년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3조(기간) 중 “6개월 또는 1년으로”를 “16주 이상, 6개월 또는 1년으로”로 한다.
 - 제7조(자격 및 평가) 제1항 제2호 나 중 “10년 이상”을 “6년 이상”으로 한다.
 - 제8조(선정제한) 제3호 “연구교원 선정 대상자 중 연구년제 8년, 산업체연수 3년이 그 만기일부터 경과하지 아니한 자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”를 “연구교원 선정 대상자 중 연구년제 8년, 산업체연수 3년이 그 만기일부터 경과하지 아니한 자.”로 하고, 같은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“ 5.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”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3조(기간) 연구년 기간은 <u>6개월 또는 1년으로</u> 구분하고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.	제3조(기간) ----- <u>16주이상, 6개월 또는 1년으로</u> -----
제7조(자격 및 평가) ① 1. (생략) 2. 가. (생략) 나. 전임교원으로 본교에서 <u>10년 이상</u> (휴직기간 제외)을 초과하여 재직한 자	제7조(자격 및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<u>6년 이상</u> -----
제8조(선정제한) (생략) 1.~2. (생략) 3. <u>연구교원 선정 대상자 중 연구년제 8년, 산업체연수 3년이 그 만기일부터 경과하지 아니한 자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</u>	제8조(선정제한) (현행과 같음) 1.~2. (현행과 같음) 3. <u>연구교원 선정 대상자 중 연구년제 8년, 산업체연수 3년이 그 만기일부터 경과하지 아니한 자.</u>
4. (생략) 5. <호신설>	4. (현행과 같음) 5. <u>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</u>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7조(업무)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 6.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한다.

- “제4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”을 “제4장 장애학생 지원”으로 장을 개정한다.

- 제21조내지 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제21조(장애이해프로그램)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”

“제22조(교수,학습지원) 장애학생의 교수,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장애학생 교수,학습지원 (강의,과제,평가 등) 2.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3. 장애학생 교수,학습 기자재 대여 4.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,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”

“제23조(대학생활지원)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기숙사, 학과활동 등의 대학생활지원 2. 대학생활에 필요한 상담 3. 진로 및 취업상담 지원 4.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”
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 2 장 조직	제 2 장 조직
제7조(업무) 생략 1.~5 (생략) <신 설>	제7조(업무) (현행과 같음) 1~5 (현행과 같음) <u>6.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</u>
제 4 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	제 4 장 장애학생 지원
제20조(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) (생략) <조신설>	제20조(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) (현행과 같음) <u>제21조(장애이해프로그램)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</u>
<조신설>	<u>제22조(교수,학습지원) 장애학생의 교수,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1. 장애학생 교수,학습지원 (강의,과제,평가 등)</u> <u>2.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</u> <u>3. 장애학생 교수,학습 기자재 대여</u> <u>4.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,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</u>
<조신설>	<u>제23조(대학생활지원)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관계</u>

현행	개정
	<u>부서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1. <u>기숙사, 학과활동 등의 대학생활지원</u> 2. <u>대학생활에 필요한 상담</u> 3. <u>진로 및 취업상담 지원</u> 4. <u>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</u>
	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WM힐빙테라피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3조(사업) 제1항 제4호 중 “미용피부테라피과”를 “미용피부화장품과”로 한다.
- 제5조(운영위원회) 제1항 중 “둔다.”를 “둘 수 있으며, 학교기업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- 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제1항 중 “미용피부테라피과”를 “미용피부화장품과”로 한다.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3조(사업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<u>미용피부테라피과</u> 와 기업과의 공동개발 수행 ② (생략)	제3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미용피부화장품과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WM힐빙테라피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<u>둔다.</u>	제5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 ----- <u>둘 수 있으며, 학교기업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</u>
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① <u>미용피부테라피과</u> 에서는 WM힐빙테라피 사업장을 현장실습교육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.	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① <u>미용피부화장품과</u> ----- -----
	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5. WM주얼리컴퍼니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3조(사업) 제1항 제4호 중 “주얼리디자인과”를 “3D제품디자인과”로 한다.
 - 제5조(운영위원회) 제1항 중 “둔다.”를 “둘 수 있으며, 학교기업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 - 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제1항 중 “주얼리디자인과”를 “3D제품디자인과”로 한다.
 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3조(사업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주얼리디자인과와 귀금속보석연구센터 및 외부 연구소, 기업과의 공동제품개발 수행 ② (생략)	제3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<u>3D제품디자인과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WM주얼리컴퍼니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	제5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 ---- <u>둘 수 있으며, 학교기업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</u>
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① 주얼리디자인과에서는 WM주얼리컴퍼니 사업장을 현장실습교육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.	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① <u>3D제품디자인과</u> ----- -----,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6. 원광보건대학교 원광여행사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3조(사업) 제1항 제4호 중 “4. 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”를 “글로벌호텔관광과, 글로벌항공서비스과”로 한다.
- 제5조(운영위원회) 제1항 중 “둔다.”를 “둘 수 있으며, 학교기업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- 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제1항 중 “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, 의료관광코디과”를 “글로벌

별호텔관광과, 글로벌항공서비스과(후략)”로 한다.

－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3조(사업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<u>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</u> 와 외부 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수탁과제 수행 ② (생략)	제3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글로벌호텔관광과, 글로벌항공서비스과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원광여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	제5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 ---- <u>둘 수 있으며, 학교기업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</u>
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① <u>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, 의료관광코디과</u> 에서는 WMTC 사업장을 현장실습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.	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① <u>글로벌호텔관광과, 글로벌항공서비스과</u> ----- -----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7. WM푸드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－ 제3조(사업) 제1항 제4호 중 “호텔관광과”를 “글로벌호텔관광과”로 한다.

－ 제5조(운영위원회) 제1항 중 “둔다.”를 “둘 수 있으며, 학교기업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－ 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제1항 중 “식품영양과”를 “식품영양과, 글로벌호텔관광과”로 한다.

－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3조(사업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외식조리과와 식품영양과, <u>호텔관광과</u> 및 기업과의 공동 개발 수행 ② (생략)	제3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글로벌호텔관광과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WM푸드물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	제5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 ---- <u>둘 수 있으며, 학교기업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</u>
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① 외식조리과와 식품영양과에서는 WM푸드물 사업장을 현장실습교육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.	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① 외식조리과와 <u>식품영양과, 글로벌호텔관광과</u> ----- -----.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8. WM카페테리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3조(사업) 제1항 제4호 중 “호텔관광과”를 “글로벌호텔관광과”로 한다.
 - 제5조(운영위원회) 제1항 중 “둔다.”를 “둘 수 있으며, 학교기업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 - 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제1항 중 “호텔관광과”를 “글로벌호텔관광과”로 한다.
 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3조(사업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	제3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
4. 외식조리과, 식품영양과, <u>호텔관광과</u> 및 기업과의 공동 개발 수행 ② (생략)	4. ----- <u>글로벌호텔관광과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WM카페테리아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.	제5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 ---- <u>둘 수 있으며, 학교기업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</u>
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① 외식조리과와 식품영양과, <u>호텔관광과</u> 에서는 WM카페테리아 사업장을 현장실습교육장 으로 활용 할 수 있다.	제10조(현장실습교육장 활용) ① ----- <u>글로벌호텔관광과</u> ----- -----.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끝.